

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절 총칙

제 1 조(과세의 근거) 구세의 세목, 과세책  
채, 과세표준,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 
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  
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1. 세무공무원 :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.
  2. 납세고지서 :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

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, 성명, 과세표준액, 세율, 세액, 납기,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차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.

제 3 조(세목)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 
 하다.

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.

- ## 1. 떠는세

- ## 2. 재산세

- ### 3. 종합토지세

③ 목적어는 다음과 같다.

- ## 1. 사업소세

**제 4 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 지방세법**  
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 
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  
 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.  
**제 5 조(조례시행에 관한 규칙)** 이 조례의  
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 정한다.

## 제 2 절 부과징수

**제 6 조(부과징수사무의 위임)** ① 구청장은 구  
 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, 독촉  
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  
 의 수납 기타 특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
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  
 여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 
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 
 정하여야 한다.

**제 7 조(납기한의 연장)** ① 납세의무자 또는  
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(이하  
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
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  
 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  
 칙”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  
 청서를 납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
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 
 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
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  
 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 
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 
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  
 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 
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  
 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  
 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 
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 
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
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 
 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 
 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  
 사,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 
 하여야 한다.

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  
 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

터 징수한다.

**제 8 조(허가동의 제한)** 구청장이 영 제27조  
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 관청에 허가  
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 
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  
 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 
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 
 한다.

1.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
2. 허가동의 종목
3. 허가동을 제한하는 이유
4. 기타 참고사항

**제 9 조(징수유예신청)**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  
 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  
 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 
 야 한다.

**제10조(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)** 구세의 납세  
 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 
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 
 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  
 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 
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탈루된 징수금의 처리)** 누락·사기  
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  
 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 
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.

**제12조(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)** 구세의  
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 
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 
 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  
 (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  
 입의 통지를 포함한다)를 한 날부터 15  
 일내로 한다.

**제13조(공시송달)**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 
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 
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.

**제14조(구세 심의위원회)** ① 구세에 관한 이  
 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  
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 
 세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 
 둔다.

② 위원회의 안전을 분장, 심의하기 위하여  
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  
 과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 
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

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

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.

④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로 한다.

⑤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제 2 장 보통세

### 제 1 절 면허세

**제15조(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)** 법 제16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면허자의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
- 면허물건의 소재지
-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

**제16조(납기)**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.

-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
-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

### 제 2 절 재산세

**제17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** 법 제184조,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소유자의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
- 건축물의 소재, 종류, 구조, 바닥면적,

### 연면적 및 용도

- 교회, 성당,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
-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·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
- 종기의 명칭 및 종류, 취득년월일, 등록번호, 등록년월일, 용도
- 선박의 선질, 명칭, 정계장, 구조, 용도, 총톤수 또는 적재량
- 항공기의 종류, 이륙중량, 적재능력, 항공기의 형식, 용도

**제18조(공용·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)**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,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** ①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에서 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

- 구매,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
- 보관, 가공,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
-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
-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

**제20조(납세관리인 지정신고)**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납세관

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과세표준)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제22조(증과대상지역) 법 제188조제1항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“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”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을 말한다.

제23조(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,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층수,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건축물을 신축, 중축, 개축한 때
2.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
3.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
4.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
5. 건축물의 구조·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·면적을 증감한 때
6.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,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

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, 종류,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(증기에 대한 신고의무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증기의 명칭 및 종류·취득년월일·등록번호·등록년월일·용도·취득가격과 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증기를 취득한 때
2. 증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

### 된 때

3. 국외에서 사용하던 증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
4. 비과세증기가 과세증기로 된 때
5. 과세증기가 비과세증기로 된 때

제25조(선박에 관한 신고의무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, 명칭, 건조연월일, 기관번호, 정계장, 용도, 톤수, 취득가격,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선박을 취득한 때
2.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
3.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

4.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
5.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

제26조(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, 명칭, 제조연월일, 형식, 용도, 이륙중량, 적재능력, 취득가격,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항공기를 취득한 때
2.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
3.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

4.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
5.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

제27조(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)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절 종합토지세

제28조(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) 법 제234조의14 제12항제6호에서 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”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

1. 구매·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
2. 보관·가공·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
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
4.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

**제29조(토지에 대한 신고의무)**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
2.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·감된 때
3.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,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
- ②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용도,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장 목적세

#### 제 1 절 사업소세

**제30조(세율)**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.

1. 재산활: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
2. 종업원활: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.5

② 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.

**제31조(남기)** 재산활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신고의무)**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층수, 건축물의 연면적, 종업원수,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
2.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
3.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
4.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
5.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,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
6.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
7.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

**제33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**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소유자의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
2. 건축물의 소재, 종류, 구조, 바닥면적, 연면적 및 용도
3. 교회, 성당,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
4.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,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
5. 비과세 및 감면사유
6. 기타 필요한 사항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#### 서울특별시마포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(안)

**제 1 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(재단법인) 및 개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